

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-58호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3일
국립전파연구원장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

(제2조제1항제9호, 제5조제4항,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제3호바목, 제11조제3항, 제23조제4항제4호, 별표 5 제1호)

-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, 적합인증(등록)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,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·보완

나.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·현행화

(제8조제4항, 17조제3항제2호, 제21조제4항제1호·제2호, 별표 1 제7호·제8호·제10호·제11호)

-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, 일부 기자재 재분류,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
-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,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

다.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

(제2조제1항제5호, 제3조제1호, 제4조제1항제2호, 제5조제7항, 제9조, 제16조제2항제1호, 제17조제3항제2호, 제18조제1항, 제18조제2항제2호·제3호, 제19조제2항, 제22조제2항제2호, 제22조제3항제3호, 제27조제1항제2호, 제28조, 별표 1 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7호·제11호, 별지 제1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10호·제12호·제13호·제17호·제18호·제19호·제20호서식)

-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,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,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

3. 의견제출

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(참조 : 정보통신 적합성평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

라. 보내실 곳 :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

○ 주소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(우편번호 : 58323)

○ 전화 : 061) 338 - 4711

○ 팩스 : 061) 338 - 4719

○ 전자우편 : kimjh777@korea.kr

※ 홈페이지(<http://www.rra.go.kr>)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
민원·참여 → 전자공청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, 제58조의11, 제58조의13,
제71조의2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